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6월 27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9.3.)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6.)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8.) 상정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9.)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 소위심사
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정부)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재난방송 접근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 수용 입장과 함께 현재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및 고시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입법의 실익이 없다는 한국방송협회 및 KBS의 반대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위원)

원안의결함.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정보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40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제40조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u> <u>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1. 제1항제1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한다)</u> <u>2. 제1항제4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u>
<u>④ · ⑤</u> (생략)	<u>⑤ · 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u>⑥</u>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u>제5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u>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u>⑦</u> ----- ----- ----- ----- <u>제6항</u>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제7항----- ----- ----- ----- ---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제40조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 -----.
--	---